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함께하는 사랑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행명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함께하는 사랑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함께하는 사랑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(구 하나은행) 및 『적립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및 법인</u>으로 하며, 고객 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.</p> <p>제 3 조 ~ 제 7 조 (생략)</p> <p>제 8 조 우대이자율 (생략) 1.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‘급여’, ‘4대연금(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)’, ‘가맹점대금(BC/하나)’ 중 한가지 이상 <u>(구)하나은행 입출금계좌</u>로 이체 시 연 (0.2)% 2.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‘아파트관리비’ 또는 ‘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 카드’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<u>(구)하나은행 입출금계좌</u>에서 결제 시 연 (0.2)% 3.<u>(구)하나은행</u>을 처음 거래 시(가입일 현재 <u>(구)하나은행</u> 예금 잔액이 0원) 또는 <u>(구)하나은행</u>을 10년 이상 거래 시(고객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) 연 (0.3)% 4.(생략)</p> <p>제 9 조 기 타 ① ~ ② (생략)</p>	<p>『함께하는 사랑 적금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범위 “함께하는 사랑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적립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및 법인</u>으로 하며, 고객 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.</p> <p>제 3 조 ~ 제 7 조 (좌동)</p> <p>제 8 조 우대이자율 (좌동) 1.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‘급여’, ‘4대연금(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)’, ‘가맹점대금(BC/하나)’ 중 한가지 이상 <u>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</u>로 이체 시 연 (0.2)% 2.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‘아파트관리비’ 또는 ‘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 카드’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<u>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</u>에서 결제 시 연 (0.2)% 3.<u>KEB하나은행</u>을 처음 거래 시(가입일 현재 <u>KEB하나은행</u> 예금 잔액이 0원) 또는 <u>KEB하나은행</u>을 10년 이상 거래 시(고객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) 연 (0.3)% 4.(좌동)</p> <p>제 9 조 기 타 ① ~ ② (좌동)</p>	<p>구행명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삭제</p> <p>개인사업자 문구 추가</p> <p>행명 변경</p> <p>행명 변경</p> <p>행명 변경</p>